

의안번호	제525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지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4일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5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4일
발의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관한 민·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정의하고 관련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 및 “민간단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미호강 유역 물환경 보전활동에 관한 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규정
(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정의에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4.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미호강 유역의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다음 각 항으로 구분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②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물환경</u>”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p> <p>5. “<u>민간단체</u>”란 미호강 지역의 물환경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p>
<p>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생략)</p> <p><u><신설></u></p>	<p>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물환경보전법</u>」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수량·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치 있는 유역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 규정

2. 비용 발생 요인

- 미호강 유역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모니터링, 일상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오염원 정화, 감시 등 환경보전사업 및 활동 등에 따른 소요 예산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14조(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 안 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오염원 정화, 감시, 교육, 홍보 환경보전 사업 및 하천관리 활동
-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

나. 추계 결과: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000,000천원 소요

- 年 200,0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미호강 유역 하천관리활동 전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 도비 100% (年 200,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0
-	-	-	-	-	-	-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사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유역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하천관리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채	-	-	-	-	-	-
도 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기 금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